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집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소집수당 근거 신설(안 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
- 2)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(소집 등)
- 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
- 4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소집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2. 15. ~ 3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3.3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소집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소집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8조 소집

제8조(소집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김동우 (☎ 3153-9464)